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 : 大田廣城市教育監
2. 件 名 : 大田廣城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案件要旨 : 別添參照
4. 檢討意見 : 別添參照

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6年 11月 29日

文 教 社 會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鎮 鎬



大田廣域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書

1996年 11月 29日

文 教 社 會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鎮 鎬

大田廣域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書

이 條例案은 1996年 11月 12日 大田廣域市教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1996年 11月 15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提 案 理 由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법률 제4746호, '94. 3. 24) 제24조 제1항 및 부칙 제4조와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339호, '94. 7. 23)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97. 1. 1부터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됨에 따라

본시 관할 도서관 설치조례의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主 要 骨 子

-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의 개정
제4조 제1항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사서서기관”으로 함. (본칙)
- 대전광역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
제4조 제1항중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를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함. (부칙)

3. 檢 討 意 見

- 동 개정조례안은 1994. 3. 24 법률 제4746호로 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사서직 또는 교육행정직으로 도서관장을 보할 수 있는 기간이 199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의 관장을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는 내용이며,

또한 위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료등 징수조례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도서관장의 직급을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바꾸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킨 내용으로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